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1. 10. 20.(수) 10:00

제23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(도시안전국 소관)



**복 지 건 설 위 원 회**  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43호
- 나. 제 출 자 : 박찬길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1. 10. 8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10. 8.

## 2. 제안이유

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범위 확대 및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‘침입범죄’ 및 ‘방범시설’ 을 정의에 추가(안 제2조제3호, 제4호)
- 나.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적용범위 확대(안 제7조제5호)
- 다. 방범시설 설치지원 대상, 기준 및 예산 지원 등 신설(안 제7조의2)
- 라.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심의대상 확대(안 제8조제1항제5호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  - 2) 「건축법」 제53조의2제2항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기 타
  - 1) 입법예고(2021. 10. 8. ~ 2021. 10. 13.)
  - 2)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별첨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조례 개정 배경

본 개정조례안은 침입범죄 취약 계층의 지원을 위한 조항 신설로 범죄 취약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하도록 함.

### 나. 주요 내용

- 1) ‘침입범죄’ 및 ‘방범시설’ 을 정의에 추가(안 제2조제3호, 제4호)
- 2)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적용범위 확대(안 제7조제5호)
  -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 사업을 추가함
- 3) 방범시설 설치지원 대상, 기준 및 예산 지원 등 신설(안 제7조의2)
  - 노인,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함
- 4)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심의대상 확대(안 제8조제1항제5호)

### 다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침입범죄 취약계층인 저소득층, 노약자, 장애인 등에게 방범시설 설치 지원 및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여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됨.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# □ 「건축법」

[시행 2021. 7. 27.] [법률 제18341호, 2021. 7. 27., 일부개정]

제53조의2(건축물의 범죄예방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,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4. 5. 28.]